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등이 기재됨으로 인하여 형사공탁절차에서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확인은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 의하게 되는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이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탁금에 관한 권리(출급, 회수동의)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또

는 포괄승계인의 인적 사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형사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출급청구인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제출의무를 면제함(안 33조제2호)
-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의 범위를 구분함(안 제86조제2항)
- 검찰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증거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판검사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신설)
-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 피공탁자가 법원이나 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4항 신설)
-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포괄승계인의

인적사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한 후 제공하도록 함(안 제87조)

4.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나. 제86조 제1항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제81조제4호 중 “증명서란”을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한다.

③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담당하는 검찰 또는 법원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이하, “피공탁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

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 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경과조치) 제33조제2호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 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3. (생략)</p> <p>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p>	<p>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 서류)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제86조 제1항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u></p> <p>3. (현행과 같음)</p> <p>제81조(용어의 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증명</u></p>

서”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5. (생략)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 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란 -----

-----.

5. (현행과 같음)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한다.

<신 설>

③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담당하는 검찰 또는 법원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p>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u>피공탁자의 인적사항</u>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 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u>피공탁자의 인적사항</u>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u>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u>(이하 “<u>피공탁자 등</u>”이라 한다)----- ----- ----- <u>피공탁자 등</u>----- ----- ----- ----- -----.</p>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7624